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장실습계약을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체결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체결 기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실시 전 현장실습계약 체결 의무 기한 부분 삭제(안 제6조 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17. ~ 2021. 1. 27.)

3) 행정규제 : 규제폐지

대통령령 제 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7일 전”을 “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u>7일 전</u> 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① ----- ----- -- <u>전</u>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91